

특정감사

감사 보고서

-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 -

2018. 3.

감사원

목 차

| | |
|--|----|
| I. 감사실시 개요 | 1 |
|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
| 2. 감사중점 | 1 |
| 3. 감사실시 과정 | 2 |
| 4. 감사결과 처리 | 2 |
| II. 감사결과 요약 | 3 |
|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9 |
| 1.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부적정(주의) | 10 |
| 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소홀(주의) | 13 |
| 3. 환경역학조사 관련 교차분석 업무 부적정(주의) | 17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A 외 660명은 2017. 9. 19. ‘김포시가 환경 법령을 위반한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장 밀집지역(김포시 ○●면)의 토양오염도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역학조사팀의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은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청구 요지

- ○○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 소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 소홀
-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역학조사팀의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위반하였는데도 공장설립을 승인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인근 지역으로 부당하게 이전

2.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김포시가 환경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도·단속하였는지 여부와 토양오염도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역학조사팀의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8. 2. 1.부터 같은 해 2. 7.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김포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의견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3. 2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요약

【청구 요지 1】

[○○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 소홀]

- 김포시는 관내 위치한 ○○이 환경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

김포시는 2012. 4. 9.과 같은 해 10. 18. 2차례 ○○의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배출시설’(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2차례(2012. 4. 12.과 같은 해 10. 30.)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한편, 김포시는 그 후 위 업체의 계속된 공장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추가적인 민원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같은 해 2. 4. 사이에 4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위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위 고발사건(2012. 10. 30.)에 범죄사실을 추가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둠에 따라 ○○의 추가적 위법사실에 대한 사법처분(벌금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계속 가동한 ○○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다는 민원을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청구 요지 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 소홀]

- 김포시 ●●면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단속에서 환경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다수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 연 3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한편, 2015년 2월 환경부가 김포시 ●●면 일대 총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62개 사업장이 환경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 등 조치됨에 따라, 그동안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위 62개 사업장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실시한 “김포시의 정기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관리대상인 □□ 등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 등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청구 요지 3】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의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 김포시는 교차분석기관에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양오염 분석결과를 ▷▷¹⁾의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왜곡함

김포시는 2014년 5월 ▷▷에 토양오염도에 대한 정밀역학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 해당 용역 기간 중 ▷▷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15년 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에 2차 교차분석²⁾을 의뢰하는 한편, ▷▷의 최종 용역보고서는 ▷▷의 정밀역학조사결과와 시험원의 교차분석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시험원의 분석결과가 ▷▷의 결과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남(15개 토양시료 중 12개에서 중금속이 불검출)에 따라 최종 용역보고서에 위 두 기관의 분석결과 평균값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 반발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다.

1) ▽▽는 주민들에 대한 검진 및 건강피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였고, ◁◁는 토양오염을 포함한 환경평가를 담당함. 이를 ▷▷이라 함

2) 1차 교차분석은 2015년 4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한국환경공단에서수행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포시와 ▷▷ 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두 기관 분석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했다고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이 김포시가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다만 김포시가 시험원에 교차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김포시가 2015년 8월 시험원에 의뢰한 토양오염도 2차 교차분석은 같은 해 4월에 실시한 1차 교차분석이 ▷▷의 정밀역학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실시한 것이고, ▷▷ 최종 용역보고서에 ‘▷▷ 분석값’과 ‘시험원 2차 교차분석값’을 평균하여 적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교차분석은 용역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이므로 교차분석 시 토양시료를 보존하도록 하여 향후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험원 측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함에 따라, 2차 교차분석 결과 15개의 시료 중 12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등 시험원의 분석결과가 기존의 분석결과와 확연히 차이 나는데도 2차 교차분석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하지 못한 채 최종 용역보고서에 ▷▷과 시험원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는 지역주민들과 ▷▷의 불신과 반발,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토양오염도 분석 등 용역 의뢰 시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재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환경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 하였다.

【청구 요지 4】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위반하였는데도 공장설립을 승인

- 김포시는 2013년 7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시행 후 1년간 위 지침의 입지기준을 위배한 공장설립 허가·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적정한 것으로 승인

김포시는 2013년 7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김포시 고시)을 제정하여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단독 주거시설에서 100m 내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별입지 승인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13년 7월 위 지침 시행 후 1년간 허가·등록된 관내 소재 76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 등 6개의 사업장이 주택으로부터 100m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 6개의 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은 1 ~ 5호 정도의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집단취락 지역³⁾이라고 볼 수 없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집단취락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처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하였다.

【청구 요지 5】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인근 지역으로 부당하게 이전]

-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

청구인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위반하여 김포시 관내 ●●리 등에서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제기된 공장 모두 위 지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하였다.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김포시

조 치 기 관 김포시

내 용

1. 업무 개요

김포시는 2012년 1월부터 관내 위치한 ○○으로 인해 악취 및 분진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받아 2012년 4월부터 ○○의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배출시설'(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2. 관계 법령

구 「대기환경보전법」(2013. 4. 5. 법률 제1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김포시는 2012. 4. 9.과 같은 해 10. 18. 2차례 ○○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12.과 10. 30. 2차례 수사기관에 고발⁴⁾하였다.

한편, 김포시는 그 후 위 업체의 계속된 공장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추가적인 민원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같은 해 2. 4. 사이에 4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김포시는 지난 2차례 고발 이후에도 ○○이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위 고발사건(2012. 10. 30.)에 ○○의 불법행위를 추가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의 추가적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벌금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포시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계속 가동한 ○○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다는 민원을 야기하였다.

4) 2012. 10. 4. 벌금 1백만 원, 2013. 3. 21. 벌금 2백만 원

관계기관 의견 김포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포시장은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김포시

조 치 기 관 김포시

내 용

1. 업무 개요

김포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2. 관계 법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일반 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⁵⁾의 경우 연 3회⁶⁾의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환경부가 2015. 2. 4.부터 같은 해 2. 10.까지 김포시 ●●리 일대 총 86개 환

5)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를 불이행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의미함

6)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장의 경우 점검횟수에서 1회를 감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62개 사업장이 환경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 등 조치됨에 따라, 그동안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위 62개 사업장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실시한 “김포시의 정기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횟수 미달 내역”과 같이 일반관리대상인 □□ 등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별표 2]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횟수 미달 내역”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인 △△ 등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김포시는 감사원 지적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일반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면밀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포시장은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횟수 미달 내역

(단위: 회)

| 연번 | 사업장 명칭 | 2015년 2월 환경부 적발 내용 | 2013년도 (점검횟수) | 2014년도 (점검횟수) |
|----|-------------------|----------------------------|------------------|------------------|
| 1 | □□ | 대기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미가동 | 0 | 0 |
| 2 | ♡♡ | 대기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여과포) 훼손 방치 등 | - ^{주1)} | 0 |
| 3 | ♠♠ |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실시 | - | 0 |
| 4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0 | - |
| 5 | ☆☆ ^{주2)} | 미신고 연마시설 설치·운영 | - | 0 |
| 6 | ●● |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흡착에 의한 시설) | - | 0 |
| 7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 | 0 |
| 8 | ▲▲ |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 0 | 0 |
| 9 | ▶▶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 설치·운영 | - | 0 |
| 10 | ▼▼ |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실시 | 0 | - |
| 11 | ◀◀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상호, 대표자) 미이행 | - | 0 |
| 12 | ♣♣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상호, 대표자) 미이행 | 0 | - |
| 13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0 | - |
| 14 | ♠♠ |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냉각시설) | 0 | 0 |

주1: “-”는 일반관리대상이 아니거나 점검횟수를 충족한 것을 의미함

주2: ☆☆의 경우 2013년도에는 중점관리대상이고, 2014년도에는 일반관리대상임

자료: 김포시 자료 재구성

[별표 2]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횟수 미달 내역

(단위: 회)

| 연번 | 사업장 명칭 | 2015년 2월 환경부 적발 내용 | 2013년 (점검횟수) | 2014년 (점검횟수) |
|----|--------|----------------------------|-----------------|-----------------|
| 1 | △△ |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 - ^{주)} | 0 |
| 2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1 | - |
| 3 | ☆☆ | 미신고 연마시설 설치·운영 | 1 | - |
| 4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1 | - |
| 5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1 | - |
| 6 | ▣▣ | 대기방지시설 미가동(흡착에 의한 시설) | - | 0 |
| 7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 | 1 |
| 8 | ●○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특정대기유해물질검출) | 1 | - |

주: “-”는 중점관리대상이 아니거나 점검횟수를 충족한 것을 의미함

자료: 김포시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역학조사 관련 교차분석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김포시

조 치 기 관 김포시

내 용

1. 업무 개요

2013. 6. 13. 김포시 ○○면 ○○리 일원에 주물공장 등이 입지함에 따라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김포시에 역학조사를 요구해 옴에 따라, 김포시는 2014. 5. 20. ▷▷⁷⁾에 정밀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2015. 7. 27. 전문가 회의(김포시 직원 3명, ▷▷ 4명, 외부전문가 7명 참석)를 개최하고, ▷▷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에서 2차 교차분석⁸⁾을 실시하고, 2차 교차분석의 결과는 ▷▷의 최종 용역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7) ▽▽는 주민들의 검진 및 건강피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였고, ◁◁는 토양오염을 포함한 환경평가를 담당함. 이를, ▷▷이라 함

8) 정밀역학조사분석의 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에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절차를 말함. 1차 교차분석은 2015년 4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한국환경공단에서수행함

이에 김포시는 2015. 8. 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에 토양 오염도⁹⁾ 2차 교차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같은 해 9. 23. 통보받아 이를 ▷▷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 관계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 토양오염실태 조사와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험원의 2차 교차분석은 2015년 4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1차 교차분석결과가 ▷▷의 정밀역학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¹⁰⁾함에 따라 ▷▷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한 것이고, ▷▷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 분석값’과 ‘시험원 2차 교차분석값’을 평균하여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2차 교차분석은 용역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석이었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험원이 2차 교차분석에 사용한 토양시료를 보존하도록 하여 향후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9) 토양이 중금속인 카드뮴, 납, 비소, 니켈, 구리, 아연 등에 오염되었는지를분석함

10) ▷▷ 정밀역학조사결과는 96개 토양시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1차 교차분석은 위 96개 토양시료 중 10개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나, 두 기관의 중금속 검출값에 몇개의 토양시료에서 차이가 발생함. 이에 김포시는 2015. 5. 28. 두 기관의 조사결과 값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2015. 7. 27.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그러나 김포시는 시험원 측에 토양시료를 분석 후 폐기하도록 함에 따라 분석결과 15개의 시료 중 12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등 시험원의 분석결과¹¹⁾가 기존의 분석결과¹²⁾와 확연히 차이 나는데도 2차 교차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 등을 하지 못한 채 최종 용역보고서에 ▷▷과 시험원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17. 환경피해지역 2차 정밀역학조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은 12개 토양시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시험원의 분석값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주민들은 두 기관의 분석값 중 높은 값을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등의 불신과 반발이 계속되어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김포시는 2016년 5월 2,400만여 원을 들여 ○○ 등 3개 기관에 의뢰하여 추가조사를 실시¹³⁾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김포시는 앞으로 토양오염도 조사 시 토양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담당자 또한 문답에서 시험원에 토양오염도 분석 의뢰 시 토양시료를 보존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11) 2차 교차분석은 김포시가 선정한 8곳과 ▷▷이 선정한 7곳에서 채취한 토양시료를 반반 나누어 하나는 시험원에서 분석 의뢰하고, 다른 하나는 ▷▷에서 분석하였으며, ▷▷은 15개 토양시료에서 모두 중금속을 검출하였음

12) 이전에 3차례 실시한 분석(1차 예비역학조사, 2차 정밀역학조사, 1차 교차분석)결과 대부분의 토양시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됨

13) 추가조사 결과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어 2016년 9월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함

조치할 사항 김포시장은 앞으로 토양오염도 분석 등 용역의뢰 시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재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환경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